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새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포함)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로 개정하였다.

다만,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는 동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서 동지구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계속 적용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16) 사업소세 비과세사업자 추가(영제209조)

사업소세가 비과세 되는 사업자로서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종전에 비영리사업자(시행령 제79조)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19혁명부상자회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을 비영리사업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소세 비과세사업자로 변경하였다.

17) 지역개발세 비과세대상 합리적 조정(영제216조)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지하수중 기타용수 과세대상에서 종전에는 지하수법 제7조 제1항단서 및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법에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것과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의 경우가 해당되어 기타용수의 경우는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은 지역개발세가 비과세되어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과세취지